

6.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

☐ 개정이유

- 동 개정 조례안은 농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 임차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법의 법률 제5958호 ('99. 3. 31)로 개정되어 동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임

☐ 주요골자

- 조례 제명을 파주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에 조례로 개정
- 농지관리 위원회의 기능중 임차료 상환에 관한 심의 사항을 삭제 (안 제8조제1항)
- 농지의 임차료 상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16조 및 별표2를 삭제

☐ 검토의견

-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며 임차료의 상환은 농지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하여 왔으나,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이와 관련한 농지법 제24조 및 제25조가 폐지됨에 따라 금번 조례 제정은 적법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